

추가약정서(1 차협력기업용)
(상생벤더구매론 건별 기한연장용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

본인은 귀행과 체결한 _____년 ____월 ____일자 상생벤더구매론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(이하 “원약정”이라 함)에 근거하여 취급된 상생벤더구매론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약하며 기한연장을 요청합니다.

제 1 조 (기한연장 대상 대출)

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구매기업의 워크아웃,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매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하여 기일에 상환되지 않은(당일만기 포함) 건별 대출에 한하여 기한연장 할 수 있기로 하며, 이를 제외한 “원약정” 및 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에 정한 사유에 의해 대출취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할 수 없다.

제 2 조 (대출금의 이자 및 이율)

- ① 지연배상금 및 기한연장에 따른 이율은 기 제출한 “원약정” 조건에 따른다.
- ② 기한연장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료와 관련 지연배상금은 기한연장 실행일에 납부한다.

제 3 조 (기한연장 기간)

-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워크아웃의 경우 “제 1 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 소집통보일”로부터 최대 130일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 할 수 있다.
- ②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의 경우 “자율협약 개시기준일”로부터 최대 130일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 할 수 있다.
- ③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에서 구매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결의가 있는 이후에는 기한연장 신청할 수 없다.

제 4 조 (상환의무 등)

- ① 대출금의 상환의무는 “원약정” 조건에 따라 본인에게 있으며, 구매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이 확정되지 못하여 구매기업의 워크아웃,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.
- ② 대출금의 변제기일전이라 하더라도 구매기업이 채권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.
-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변제기일전 상환시 환출되는 이자는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.

붙임 : 기한연장 요청 명세

20 년 월 일

본인(채무자) : _____(인)

주 소 :

붙임 : 기한연장 요청 명세

No	대출정보					지급승인정보					원청채권정보			
	계좌번호	대출금액	대출취급일	대출만기일	연장후만기일	승인번호	판매기업	지급승인금액	지급승인일	구매기업결제일	채권번호	원청기업	사업자등록번호	중심업체코드
1														
2														
3														
4														
5														
6														
7														
8														
9														
10														
11														
12														
13														
14														

※ 계좌번호는 실행번호까지 기재함.